

분양대상 토지 내역

※ 공급대상 필지 내역 - (별첨)필지별 공급가격 세부내역자료.xls 참조

1.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
가. 토지이용계획도 및 세부필지 위치도	2
나. 건축행위 기준	3
2. 안성 원곡물류단지	5
가. 토지이용계획도 및 세부필지 위치도	5
나. 건축행위 기준	6
3. 안성 제4 잔여지 지적 위치도	8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illegible]

□ 건축행위기준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봉안당(납골당)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지원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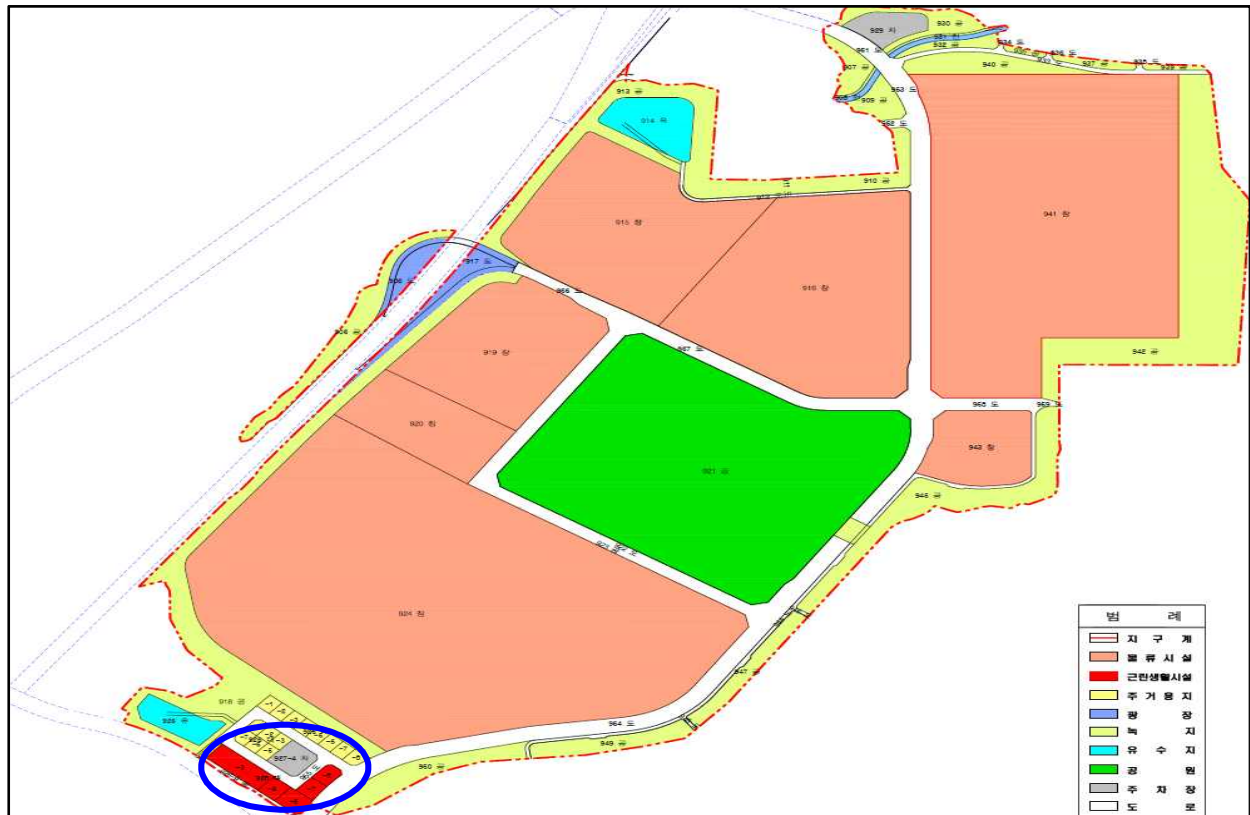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는 지상1층에만 설치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점포주택은 점포 외 3가구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소로변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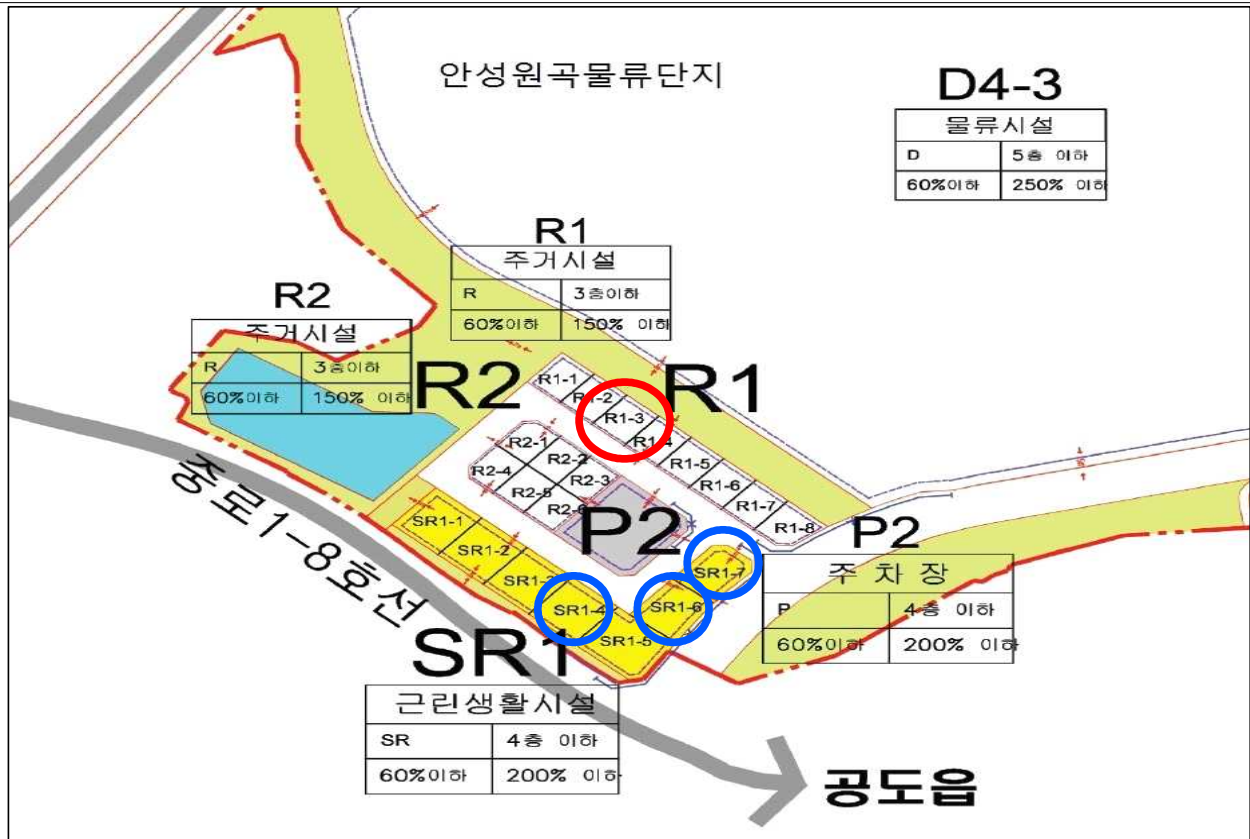
[주차장용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 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불안당(납골당)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토지이용계획도



세부필지별 위치도



□ 건축행위기준

[지원시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시설(자목 중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다목 관람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시형으로 권장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를 공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전면도로변:3m, 녹지변:2m 공개공간의 지상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파고라,휴게 의자 등)을 제외한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주거시설용지]

구분		주거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일반음식점, 기원, 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목 서점, 라목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마목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목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등, 자목 사진관, 표구점, 학원 등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형태		지붕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 이외의 형태로 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담장 : 도로와 면하는 부분의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1.2m이하의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한다.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도로변:1m, 녹지변:2m

[주차장용지]

구분		주차장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
	허용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차 전용건축물 설치 시 전체 건축연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아래 시설의 설치 가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목의 장의사,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다목의 관람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소매시장, 다목 상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주차장부지에 주차용도 및 주차용도이외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도로변:3m, 녹지변:2m

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